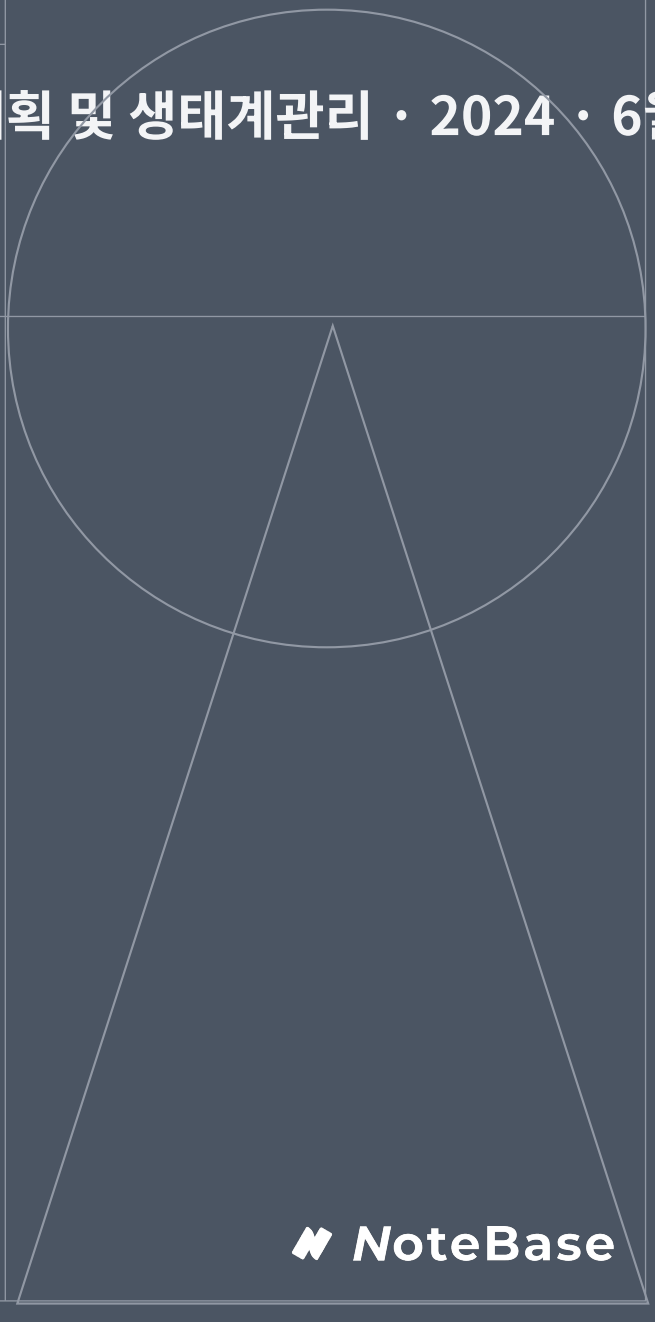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4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4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4 · 6월

문 2.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상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② 브라운송어(Salmo trutta)
③ 라쿤(Procyon lotor)
④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정답 3번

①
뉴트리아는 포유류 목록에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이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2호 포유류 가목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 · 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2. 생태계교란 생물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SME58f44inI4WwM_9e3kBWrDn1aM5jVt.webp

NoteBase

②

브라운송어는 어류 목록에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이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2호 어류 다목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 · 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2. 생태계교란 생물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UYbLZuFR0r0KGy8DWMqq998qWUwcEfKN.webp

③

라쿤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아니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2호 포유류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 · 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2. 생태계교란 생물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SME58f44inI4WwM_9e3kBWrDn1aM5jVt.webp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2호 포유류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어류, 양서류, 곤충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fH548VLhQ_OMFi3Wt2FVOtXGcPpfwkQ4.webp

NoteBase

④

돼지풀은 식물 목록에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이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2호 식물 가목
1. 공통 적용기준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2. 생태계교란 생물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XyVqBvQTNnq0NWDajNf0lir-DRwDsbUJ.webp

NoteBase

문 3. 「조경 설계기준」 상 수목식재 시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 발생 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고 녹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임해매립지의 방풍 · 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300m를 확보한다.

③ 방재녹지는 식수대의 폭을 5☒10m로 하고 방화지구의 성격, 규모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한다.

④ 보안, 접근억제, 상충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정답 3번

①

재해 발생 시 피난지로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잔디·기타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며, **녹화면적률을 70% 이상**으로 확보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수목식재(KDS 34 40 10:2024) 4.1.1(2)
4. 설계

4.1 설계일반

4.1.1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

(2) 재해 발생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고 녹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임해매립지에 설치하는 **방풍·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300m**를 확보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수목식재(KDS 34 40 10:2024) 4.1.1(6)
4. 설계

4.1 설계일반

4.1.1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

(6) 임해매립지의 방풍·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300 m를 확보한다.

NoteBase

③

방재녹지는 **식수대의 폭을 6~10m**로 하고 방화지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크기를 조정한다. 선지의 5~10m는 하한 수치가 잘못되었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수목식재(KDS 34 40 10:2024) 4.1.1(7)
4. 설계

4.1 설계일반

4.1.1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

(7) 방재녹지는 식수대의 폭을 6~10 m로 하고 방화지구의 성격, 규모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한다.

④

보안·접근억제·상충하는 토지이용의 조절을 위한 녹지는 교목·관목·잔디·기타 지피식물을 식재하며, **녹화면적률을 80% 이상**으로 확보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수목식재(KDS 34 40 10:2024) 4.1.1(3)
4.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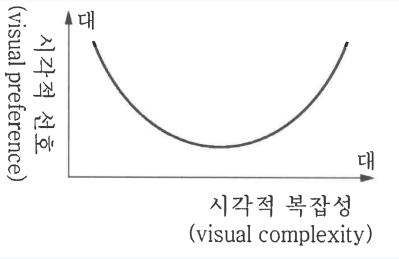
4.1 설계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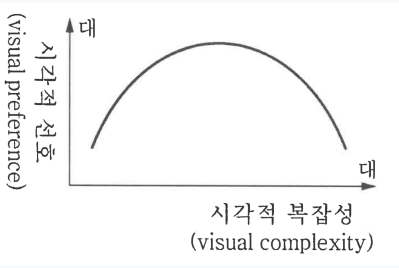
4.1.1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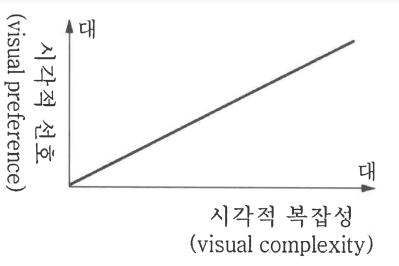
(3) 보안, 접근억제, 상충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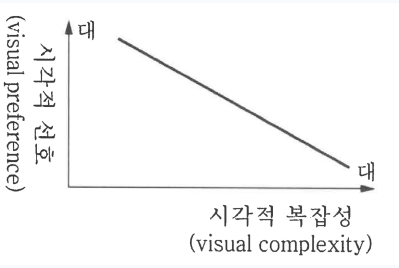
NoteBase

문 4. 경관의 시각적 복잡성과 시각적 선호의 일반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경관이 지나치게 단순하면 단조롭고, 지나치게 복잡하면 혼란스러워 선호가 낮아진다. 따라서 **중간 수준의 복잡성에서 선호가 가장 높은 역 U자형 관계**로 설명한다.

NoteBase

도식 해설

가로축은 시각적 복잡성으로 오른쪽일수록 복잡하고, 세로축은 시각적 선호로 위쪽일수록 선호가 높다. 따라서 곡선의 가장 높은 지점이 어떤 복잡성 수준에 있는지를 살핀다.

②의 곡선은 복잡성이 낮을 때 선호가 낮다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상승하고, 중간 수준에서 최고점에 이른 뒤 다시 하락한다. 이는 **적정한 복잡성**을 선호한다는 역 U자형 모형이다. 너무 단순한 경관은 시각적 자극과 변화가 부족하여 단조롭게 느껴지고, 너무 복잡한 경관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을 줄 수 있다. 적절한 다양성과 변화가 있는 중간 수준에서는 이러한 양극단의 문제가 줄어든다.

①의 U자형은 중간 수준에서 선호가 가장 낮다는 관계이므로 역 U자형과 반대이다.

③의 우상향 직선은 복잡할수록 계속 선호가 높아지고,

④의 우하향 직선은 복잡할수록 계속 선호가 낮아지는 관계이다.

두 직선 모두 **중간 수준에서 선호가 최대가 되는 전환**을 나타내지 못한다.

NoteBase

문 5. 목표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산종(umbrella species): 유사한 서식지나 환경조건에 발생하는 군락을 대표하는 종으로 특정한 토지이용 행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야생생물군집의 초기 경보나 지표종

② 깃대종(flagship species): 상징종으로 종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에 의해 일반 사람들에게 서식지의 보호를 호소하는 데 효과적인 종

③ 희귀종(threatened species): 희소종으로 서식지의 축소, 생물학적 침입, 남획 등으로 절멸의 우려가 있는 종

④ 핵심종(keystone species): 중추종으로 생물군집에 있어서 생물 간 상호작용의 필요가 있고, 그 종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변질된다고 생각되는 종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초기 경보나 지표종'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종**의 역할이다. **우산종**은 그 종이 필요로 하는 서식지를 보전하면 같은 공간에 사는 다른 여러 종도 함께 보호되는 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토지이용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물군집의 상태를 알려 주는 것은 **지표종**의 설명이다. 우산종은 넓은 활동 범위나 서식지 요구를 가진 종으로, 그 종의 서식지를 확보하고 보호함으로써 함께 서식하는 여러 종까지 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표종은 환경 상태를 파악하는 역할에, 우산종은 서식지 보호의 파급 효과에 초점이 있다.

② O: 깃대종은 아름다움·매력·상징성 등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 **보전 활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종이다. 해당 종을 상징으로 내세워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전에 참여하도록 호소한다는 설명이 부합한다.

③ O: 선지는 '희귀종'을 서식지 축소, 생물학적 침입, 남획 등으로 **절멸이 우려되는 보전 대상종**이라는 의미로 제시한다. 이러한 요인은 개체군을 감소시키거나 생존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만 엄밀히 threatened species는 '위협종'을 뜻하며, 단순히 개체 수가 적거나 분포가 좁다는 희소성과 절멸 위험은 구별해야 한다.

④ O: 핵심종은 포식·경쟁 등 생물 간 상호작용을 통해 **그 수나 생물량에 비해 군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이다. 이 종이 사라지면 다른 종의 개체 수와 종 구성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가 변질될 수 있다는 설명이 부합한다.

NoteBase

문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보기>의 (가), (나)에 각각 해당하는 비율[%]은?

<보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가) 이상의 범위에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① (가): 30 (나): 40
② (가): 30 (나): 50
③ (가): 35 (나): 40
④ (가): 35 (나): 5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법률이 정한 감축비율의 하한은 **35%**이고, 그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감축비율은 **40%**이다. 두 비율 모두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빈칸별 해설

(가) 3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35%는 법률이 정한 하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감축비율은 이보다 낮을 수 없다.

(나) 40%: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40%로 정한다. 따라서 실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적용되는 비율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며, 법률상 하한인 35%와 구별된다.

(가) 35%, (나) 40%의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인복지관
② 경로당
③ 자동차경주장
④ 기상관측시설

정답 3번

①
노인복지관은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0Xh2ABXe-uYCd37CTHquaC-SE5E7YwmO.webp

②
경로당은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0Xh2ABXe-uYCd37CTHquaC-SE5E7YwmO.webp

③
자동차경주장은 공원시설인 **운동시설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IMktLNdu73V1-BZ1LOlQZK1fywGj4FK.webp

NoteBase

④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은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아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QQvM9r1v-WbX4aCMpr36azPFjw3y07cj.webp

NoteBase

문 8. 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단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기본계획: 10년
②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 10년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5년
④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 · 휴양 기본계획: 10년

정답 4번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 관리 ·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 ·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NoteBase

④

산림청장은 산림문화 · 휴양기본계획을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문화 · 휴양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 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NoteBase

문 9. 「조경기준」 상 '대지안의 식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경면적의 배치 시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록수 식재비율은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조경면적의 산정 시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경면적의 산정 시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2번

①

대지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이 있으면 조경면적을 **이들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조경기준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 · 광장 · 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록수의 기준 식재비율은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이다. 선지의 10퍼센트는 기준 비율과 다르다.

조경기준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③

조경면적을 산정할 때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조경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NoteBase

④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조경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경관생태학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경관의 (가)은/는 경관 요소들의 공간적 패턴과 분포를 의미하며, (나)은/는 (가)을/를 통한 동·식물, 물, 바람, 물질, 에너지 등의 움직임과 흐름을, (다)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패턴과 (나)의 역동성 및 (다)을/를 의미한다.

① (가): 기능, (나): 구조, (다): 변화
② (가): 기능, (나): 변화, (다): 구조
③ (가): 구조, (나): 변화, (다): 기능
④ (가): 구조, (나): 기능, (다): 변화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경관 요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구조**, 그 요소 사이에서 생물·물질·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은 **기능**이다. 이 구조와 기능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변화'이다.

빈칸별 해설

(가) 구조: 경관 요소들의 **공간적 배치와 분포**를 뜻한다. 숲·초지·하천이 어디에 있고, 각각의 크기와 형태가 어떠하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구조에 해당한다.

(나) 기능: 경관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생물·물질·에너지의 이동과 흐름**을 뜻한다. 예를 들어 숲 사이의 연결 통로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구조이고, 동물이 그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기능이다. 따라서 '움직임과 흐름'은 구조 자체가 아니라 구조를 통한 생태적 작용을 가리킨다.

(다)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숲의 면적이나 연결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구조의 변화이고, 그에 따라 생물의 이동이나 물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기능의 변화이다. 공간적 배치나 이동 현상 자체와, 이들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가)는 구조, (나)는 기능, (다)는 변화로 대응하며, 이 조합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환경정책기본법」상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① 환경기준
② 환경용량
③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④ 환경보전

정답 2번

공통 해설

환경용량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뜻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9.1.15>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NoteBase

문 1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목은?

<보기>
· 앵글러의 분류체계상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 관목이다.
· 잎은 단엽으로 마주나며, 잎보다 꽃이 먼저 피고, 꽃은 노란색으로 개화하며, 열매는 삭과로 2개로 갈라진다.

① 생강나무
② 목서
③ 산수유
④ 개나리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개나리는 **물푸레나무과의 낙엽활엽 관목**으로,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핀다. 특히 열매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삭과**라는 점이 생강나무·산수유와 구별되는 단서이다.

핵심 풀이

개나리: 물푸레나무과의 낙엽활엽 관목이다. 단엽이 마주나고, 잎이 나오기 전에 노란 꽃이 피므로 보기의 잎과 꽃에 관한 설명에 부합한다. 열매는 익으면 마른 껍질이 갈라져 씨가 나오는 **삭과**이며, 두 갈래로 갈라진다. 꽃의 색뿐 아니라 분류군·낙엽성·열매의 종류를 함께 보면 개나리로 식별할 수 있다.

생강나무·산수유와의 구분: 두 수목도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피지만, 생강나무는 **녹나무과이며 잎이 어긋난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이며 열매는 과육 속에 단단한 핵이 있는 **핵과**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삭과와 다르다.

목서와의 구분: 목서는 개나리와 같은 물푸레나무과이고 단엽이 마주나지만, **상록활엽수**이므로 보기의 낙엽성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도시공원 설치를 위한 입지여건 중 최적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세 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
② 간선,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변 주민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토지
③ 근린공원 유치권내 공원시설이 없고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조성효과가 높은 지역
④ 나대지로 공원시설화가 가능한 토지

정답 1번

①

세 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는 **준적합지**로 분류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1-2.
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 · 관리

제1절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

3-1-2. 도시공원은 다음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Gd4pA8xZWh89uOiVwEVmqs9zCMJT3Ajb.webp

②

간선·이면도로변에 위치하거나 인근 주민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부지는 **접근성 측면에서 최적합지**로 분류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1-2.
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 · 관리

제1절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

3-1-2. 도시공원은 다음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Gd4pA8xZWh89uOiVwEVmqs9zCMJT3Ajb.webp

NoteBase

③

근린공원 유치권 안에 공원시설이 없고 주민이 밀집하여 **공원 조성효과가 큰 지역은 최적합지**로 분류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1-2.
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 · 관리

제1절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

3-1-2. 도시공원은 다음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Gd4pA8xZWh89uOiVwEVmqs9zCMJT3Ajb.webp

④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중 **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최적합지**로 분류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1-2.
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 · 관리

제1절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

3-1-2. 도시공원은 다음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Gd4pA8xZWh89uOiVwEVmqs9zCMJT3Ajb.webp

NoteBase

문 14. 「건축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구역이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③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④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정답 2번

①

개발제한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②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금지되는 공원은 **자연공원이며, 도시공원은 지정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2016.2.3>

NoteBase

③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④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NoteBase

문 1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 목록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훼손지의 생태가치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식생 훼손 정도
② 수질 상태
③ 생태축 단절 현황
④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출현 현황

정답 4번

①
식생 현황의 평가항목에는 **식생 훼손 정도**가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나목1)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1. 훼손지의 생태가치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3GThWN1Xnw0e67vWiihLk8xGpLeTuhd-.webp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물환경의 평가항목에는 **수질 상태**가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다목1)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1. 훼손지의 생태가치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In0PRQgjutQsaX7fVy1r1JF9N9mBZKtO.webp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oteBase

③

생태축 연결성은 **생태축 단절 현황 등**을 평가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마목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1. 훼손지의 생태가치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7X3I_ijOPPjKeXjMBmFFqaruqSSN_LMZ.webp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야생생물 서식의 평가항목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현황**이다. 선지는 이를 야생동물 출현 현황으로 바꾸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바목3)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1. 훼손지의 생태가치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CJekOX9eOIrZHwlPBc6aY0W7sa7I3MHo.webp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NoteBase

문 16. 「자연공원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②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③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④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3번

①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②

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 · 이용 ·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NoteBase

③

용도지구 결정, 공원시설 설치, 건축물 철거·이전,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은 **공원계획**이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이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 · 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 · 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 ·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④

공원사업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NoteBase

문 17. 「습지보전법 시행령」상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②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③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④ 습지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①

습지보전기본계획에는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②

습지보전기본계획에는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③

습지보전기본계획에는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NoteBase

④

시행령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 훼손원인 분석·복원, 관계기관의 협조, 전문인력·전문기관 육성, 교육·홍보,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조달방안을 열거한다.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 · 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NoteBase

문 18. 기능식재의 유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녹음식재

② 방풍식재

③ 지피식재

④ 유도식재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도식재는 이용자의 이동 방향을 안내하는 **공간조절 식재**이다. 녹음·방풍·지피식재는 햇빛, 바람, 토양 등 물리적 환경을 조절하는 **환경조절 식재**로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녹음식재: 수목의 수관으로 **그늘을 제공**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여름철 더위를 완화한다. 빛과 열 환경을 조절하므로 환경조절 식재에 해당한다.

② 방풍식재: 수목을 배치하여 **바람의 세기를 줄이고** 강풍으로부터 시설과 이용 공간 등을 보호한다. 바람이라는 기후 요소를 조절하므로 환경조절 식재에 해당한다.

③ 지피식재: 잔디나 낮게 자라는 식물로 **지표면을 덮어 토양을 보호**한다. 빗물 등에 의한 토양 유실을 줄이는 등 지표 환경을 안정시키므로 환경조절 식재에 해당한다.

④ 유도식재: 통로나 진입로를 따라 식물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동선을 안내**한다. 이동 방향과 공간 이용을 조절하므로 공간조절 식재에 해당한다.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①·②·③은 환경조절 식재이고, ④ 유도식재는 공간조절 식재이므로 나머지와 유형이 다르다.

NoteBase

문 1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상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②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③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④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정답 1번

공통 해설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 · 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NoteBase

문 2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대한 최소 크기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② 폭 3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③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④ 폭 3.3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정답 1번

공통 해설

평행주차형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1) 단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NoteBase